




규정

대학품질개선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A705
제정일자	2016. 12. 23.
개정일자	2023. 02. 28.
개정번호	3
페이지	1/4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16. 12. 23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		직 책	담 당	교무학생처장	사무처장	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5	
		제정일자	2016. 12. 23.	
	대학품질개선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대학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품질개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정한다.

제3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학경영과 발전계획
2.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
3.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
4. 학생 및 교직원
5. 기타 대학품질개선에 필요하다고 정한 기준

제4조(평가시기) 대학품질개선 평가는 년 1회 실시하며 평가시기와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대학품질개선위원회) ① 대학품질개선 운영을 위하여 대학품질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이 되고, 당연직 내부위원은 교무학생처장, 산학입학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임명직 내부위원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며,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1인 이상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경영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품질개선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부서 및 학과의 성과지표 등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각종 만족도 조사결과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사항
4. 기타 교육품질 개선과 환류에 관한 사항

제8조(결과의 심의 및 보고) 대학품질개선 결과 및 환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 거쳐

	규정		문서번호	TWP-A705
			제정일자	2016. 12. 23.
	대학품질개선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3. 02. 28.
			개정번호	3

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운영부서) 이 규정에 의한 대학품질개선 업무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품질개선 운영 업무를 달리 위임할 수 있다.

제10조(대학품질개선운영팀) ① 대학품질개선 평가의 원활한 실무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품질개선운영팀(이하 “T/F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T/F팀은 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며,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T/F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대학품질개선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요소 작성
2. 대학품질개선 평가 결과 분석
3. 대학품질개선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4. 그 밖에 대학품질개선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④ T/F팀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전공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와 T/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(기타) 대학품질개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